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만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04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이관·정비하고, 사업구역 결합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 결합 요건 명시(안 제12조)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해 둘 이상의 항만구역 등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대체 항만시설의 건설이 필요하거나 항만 주변지역에 산재한 항만 관련 시설의 일괄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함

나. 사업구역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13조)

측량 및 도서상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사항 정정을 위해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중앙심의회 심의 절차

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필요사항 등 명시(안 제28조)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로부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의 수행 업무를 항만재개발사업 재원의 확보·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 등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제2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말한다.

제3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항만재개발의 기본방향
2.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3.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개발할 지역 및 그 선정 사유
4.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구상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본계획 및 관련 자료
 2. 시·도지사: 기본계획 중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
-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개발할 지역 면적의 축소
2.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개발할 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확대
3. 추정사업비의 변경
4.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또는 공원녹지계획과 관련한 기본 구상의 변경(법 제9조와 제11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따라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기초조사의 내용·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지형·자원·생태 등 자연 현황
2. 태풍·수해·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 현황 및 추이
3. 인구·교통·관광 등 도시 현황
4. 기반시설·토지이용 등의 현황
5. 항만계획, 도시·군계획 등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현황
6. 문화재의 분포 현황

7. 공원 및 녹지의 분포 현황

8. 해안초소 등 국방·군사시설의 현황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조화로운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사항에 대하여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제6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개요
2. 사업계획의 평가계획
3. 공모참가자격 및 일정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지정 절차
5. 항만재개발사업계획서 작성지침
6. 제1호부터 5호까지의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작성이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모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평가하여 이를 채택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채택된 사업계획안의 응모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축적 25,000분의 1의 위치도
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경계와 그 확정 사유를 표시한 축적 5,000분의 1의 지형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5. 대상지역 안의 토지·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자료

6.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7. 단계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제8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 등을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 등의 개최 목적

2. 공청회 등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사업계획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공청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열람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항만재개발사업 명칭의 변경
2. 대상지역 면적의 축소
3. 대상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확대
4.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한 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의 변경
6.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내용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의 변경
7. 1년 이내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수반되는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또는 재원조달계획 중 총사업비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②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업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시행기간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1. 법령 및 항만재개발사업 목적에 들어맞지 아니하는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항만재개발사업 목적에 들어맞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 등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연구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적정사업비, 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대하여 해당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된 사업계획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보한 사업계획을 반영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제안내용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을 위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안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제7조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구성 계획에 사업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경우

2. 제안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제7조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구성 계획에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경쟁 등의 방식으로 선정하는 경우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제안서가 접수된 날부터 제6항에 따른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 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6항에 따른 공고 시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적정사업비·수익률 등 제반 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3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변경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둘 이상의 협상대상자와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안서를 검토·평가할 때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범위에서 평가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⑫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와 제11항에 따른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결합)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항만구역(「항만법」 제3조에 따라 구분된 동일 항만의 항만구역으로 한정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중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에 따라 대체 부두 등의 건설이 필요한 경우

2.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산재한 항만 관련 산업체 등의 일괄 정비
비가 필요한 경우
3. 도시경관, 문화재, 군사시설 및 공항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및 「공항시설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사업구역의 변경)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구역 면적의 축소
2. 사업구역 면적 10퍼센트 이내의 증가
3.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한 사업구역의 위치변경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사
업구역의 변경
5. 측량 및 도서상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사항의 정정

제14조(사업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향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4. 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사유

제15조(행위제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 구조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성토(盛土)·정지(땅고르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遊漁)
6. 토지분할

7.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8.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항만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3. 이동이 용이한 물건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쌓아놓는 행위

4.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植栽)(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제1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다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 회사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 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③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제17조(사업시행자의 취소의 사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제11조제1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4. 사업시행자의 지정·변경·취소일
5. 사업시행자의 지정·변경·취소 사유

제19조(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

하 “입주예정자”라 한다)로 하여금 항만재개발사업 중 입주예정자가 입주 또는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부지조성사업 대행자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도시교통정

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약에 필요한 서류

7.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귀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8.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약에 필요한 서류

10.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7호의 단계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기능별·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제21조(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필요한 토지의 확보계획

2. 항만재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제22조(실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실시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실시계획의 개요
5. 사업시행기간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제24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소
 2.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정정이 필요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변

경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실시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파산 등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승인의 취소 등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실시계획 승인 취소 등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4.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등 처분내용·처분일 및 처분 사유

제27조(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가·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제2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 재원의 확보·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
2.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의 분석·작성
3.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총괄관리사업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23조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

라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항만 재개발사업의 토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것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 간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것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에서 환지를 실시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구역
2.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실시한다는 뜻
3. 환지 조건
4. 환지 신청 기간 및 협의 기간

③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환지 신청 기간에 환지신청서에 토지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지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협의 기간에 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규모·금액 및 기간
3.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탁자가 부동산·기자재 또는 노무자(勞務者)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명칭 등 체결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2.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

④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른다.

제31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2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면적·위치·상태·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면적 및 공급 목적
2.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원형지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
4. 원형지 사용조건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형지 공급계획이 사업계획에 들어맞는 경우에만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1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2.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⑤ 법 제28조제6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원형지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임대주택 용지

2. 기반시설 용지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⑥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아니하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⑧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법 제28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원형지 공급계약으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선도로의 건설비
2.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4. 항만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5. 도로·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비용
6. 사업구역 밖의 간선도로·광역상수도시설 등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 외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사업구역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외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4조(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속기간 및 정년 잔여기간에 대한 증빙 서류

2.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작업장의 소멸 또는 일부 소멸에 대한 증빙 서류

3. 항운노동조합의 탈퇴 여부에 관한 서류

4. 재직증명서(재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지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운노동조합 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계대책협의회(이하 “생계대책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생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사업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항만재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생계대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사람 1명
2. 향운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1명
3.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추천한 사람 1명

4. 변호사, 공인노무사 및 항만의 개발·운영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생계대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생계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제4절 준공확인 등

제36조(준공확인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실시할 때 효율적인 준공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사업시행자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제38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①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지의 위치
4.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39조(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등)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항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제40조(조성토지의 분양·임대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라 한다)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양·임대 계획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조성토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
2.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 요건 및 선정 방법
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조성토지의 가격결정 기준
5. 조성토지의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된 공고의 방법 및 공고 사항
6. 그 밖에 조성토지의 원활한 분양 또는 임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와 관련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및 제1항에 따른 분양·임대 계획서에 따라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조성토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분양 또는 임대 가격
5. 분양 또는 임대 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자격

7.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시의 구비서류

제41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여 하는 개발이익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퍼센트로 한다.

제4장 보칙

제42조(입주자협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협의회”라 한다)는 그 구성 당시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입주자협의회 회의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협의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43조(권리·의무의 이전)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상속

2. 법인의 인수·합병

3. 법원의 판결

제4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의견 청취 및 고시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및 고시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20조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개최
5. 법 제21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6. 법 제22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7. 법 제24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사용
8. 법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9. 법 제35조에 따른 준공확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
10.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11.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2. 법 제41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13. 법 제42조에 따른 청문(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14. 법 제43조에 따른 권리·의무 이전의 인가(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만 해당한다)

15.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변경: 0000년 00월 00일
2. 제15조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 0000년 00월 00일
3. 제1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 0000년 00월 00일
4. 제31조에 따른 선수금: 0000년 00월 00일
5. 제32조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0000년 00월 00일
6. 제40조에 따른 조성토지의 분양·임대 방법 등: 0000년 00월 00일
7. 제41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0000년 00월 00일

제5장 벌칙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일반기준

-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50	70	100
나.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50	70	100
다.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	법 제49조제1항제3호	20	30	50

에 출입한 경우				
라. 법 제2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100	150	2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항만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이 신청된 항만재개발사업은 신청에 따른 행정처분이 완료된 이후부터 제44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법」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항만법」”을 “「항만법」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③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59조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④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다목의 대상 계획 및 지구·구역 등의 종류란 중 “「항만법」 제51조제1항”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협의 요청시기란 중 “「항만법」 제51조제3항”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제4호라목의 대상 계획 및 지구·구역 등의 종류란 중 “「항만법」 제54조제1항”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협의 요청시기란 중 “「항만법」 제54조제3항”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1호나목 중 “「항만법」 제51조제1항”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같은호다목 중 “「항만법」 제54조제1항”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4호바목 중 “「항만법」 제53조제3항”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호사목 중 “「항만법」 제54조제6항”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으로 한다.

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7)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항만법」 제54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협의 요청시기란 중 “「항만법」 제54조제3항”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항만법」 제2조제8호”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생계지원금 산정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구분	종류	산정 기준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	기준임금 ×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값 × 정년 잔여기준에 따른 기준값 ※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값은 아래 표와 같다. <table><tr><th>지급대상자</th><th>지급기준</th></tr><tr><td>1. 근속기간 15년 미만인 사람</td><td>1 - [(180 - 근속기간) × 4/100 × 1/12]</td></tr><tr><td>2. 근속기간 15년 이상인 사람</td><td>1</td></tr></table> ※ 정년 잔여기간에 따른 기준값은 아래 표와 같다. <table><tr><th>지급대상자</th><th>지급기준</th></tr><tr><td>1. 정년 잔여기간 5년 이하인 자</td><td>정년 잔여기간 × 1/2</td></tr><tr><td>2. 정년 잔여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인 자</td><td>[60 + (정년 잔여기간 - 60) × 1/2] × 1/2</td></tr><tr><td>3. 정년 잔여기간 10년 초과한 자</td><td>45</td></tr></table> ※ 위의 근속기간 및 정년 잔여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1. 근속기간 15년 미만인 사람	1 - [(180 - 근속기간) × 4/100 × 1/12]	2. 근속기간 15년 이상인 사람	1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1. 정년 잔여기간 5년 이하인 자	정년 잔여기간 × 1/2	2. 정년 잔여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인 자	[60 + (정년 잔여기간 - 60) × 1/2] × 1/2	3. 정년 잔여기간 10년 초과한 자	45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1. 근속기간 15년 미만인 사람	1 - [(180 - 근속기간) × 4/100 × 1/12]																
2. 근속기간 15년 이상인 사람	1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1. 정년 잔여기간 5년 이하인 자	정년 잔여기간 × 1/2																	
2. 정년 잔여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인 자	[60 + (정년 잔여기간 - 60) × 1/2] × 1/2																	
3. 정년 잔여기간 10년 초과한 자	45																	
	작업장소멸위로금	<table><tr><td>근속기간</td><td>5년 미만</td><td>5년 이상 7년 미만</td><td>7년 이상 9년 미만</td><td>9년 이상 11년 미만</td><td>11년 이상 13년 미만</td><td>13년 이상 15년 미만</td><td>15년 이상</td></tr><tr><td>개월</td><td>5개월 분의 기준임금</td><td>6개월 분의 기준임금</td><td>7개월 분의 기준임금</td><td>8개월 분의 기준임금</td><td>9개월 분의 기준임금</td><td>10개월 분의 기준임금</td><td>11개월 분의 기준임금</td></tr></table> ※ 위의 근속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속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1년 미만	11년 이상 13년 미만	13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개월	5개월 분의 기준임금	6개월 분의 기준임금	7개월 분의 기준임금	8개월 분의 기준임금	9개월 분의 기준임금	10개월 분의 기준임금	11개월 분의 기준임금
근속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1년 미만	11년 이상 13년 미만	13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개월	5개월 분의 기준임금	6개월 분의 기준임금	7개월 분의 기준임금	8개월 분의 기준임금	9개월 분의 기준임금	10개월 분의 기준임금	11개월 분의 기준임금											
전환배치자	작업장소멸위로금	<table><tr><td>근속기간</td><td>5년 미만</td><td>5년 이상 7년 미만</td><td>7년 이상 9년 미만</td><td>9년 이상 11년 미만</td><td>11년 이상 13년 미만</td><td>13년 이상 15년 미만</td><td>15년 이상</td></tr><tr><td>개월</td><td>5개월 분의 기준임금</td><td>6개월 분의 기준임금</td><td>7개월 분의 기준임금</td><td>8개월 분의 기준임금</td><td>9개월 분의 기준임금</td><td>10개월 분의 기준임금</td><td>11개월 분의 기준임금</td></tr></table> ※ 위의 근속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속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1년 미만	11년 이상 13년 미만	13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개월	5개월 분의 기준임금	6개월 분의 기준임금	7개월 분의 기준임금	8개월 분의 기준임금	9개월 분의 기준임금	10개월 분의 기준임금	11개월 분의 기준임금
	근속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1년 미만	11년 이상 13년 미만	13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개월	5개월 분의 기준임금	6개월 분의 기준임금	7개월 분의 기준임금	8개월 분의 기준임금	9개월 분의 기준임금	10개월 분의 기준임금	11개월 분의 기준임금										
	교육훈련비	대체작업장에서의 근무를 위한 교육훈련의 비용 지원																
휴업임금보전비	퇴직 후 전환배치 전까지의 기간 × 기준임금 × 0.7 ※ 퇴직 후 전환배치 전까지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교통보조금	기준임금 × 2개월																
	일부 작업장 소멸 근무자	사업시행자와 해당 항운노동조합 간에 합의에 따라 지급																

비고

1. “퇴직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경우 해당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환배치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경우 퇴직하지 않고 다른 대체 작업장으로 옮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일부 작업장 소멸 근무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일부 소멸된 경우 같은 항만 내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준임금”이란 항운노조원이 퇴직하기 전 1년 전의 임금으로서 연속된 3개월의 임금 총액 중 최대의 값을 가지는 3개월 분 임금의 월 평균금액을 말한다.
5. 생계안정지원금을 받은 퇴직 항운노동조합원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생계안정지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50	70	100
나.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지	법 제49조제1항제2호	50	70	100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경우				
다.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 에 출입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20	30	50
라. 법 제21조제6항 후단을 위반 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 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 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100	150	200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연 락 처	(044) 200 - 5986